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고 일 준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강태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8년 4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안 제3조)

본 조례는 건당 5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함.

###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책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및 활용(안 제8조)

정책연구용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구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그 추진상황 및 관련자료를 도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활용하도록 함.

라.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안 제13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위원 등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평가전문위원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예비평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마.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안 제14조)

과제담당관(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4. 검토의견

최근 지방행정 수행에 있어 정책연구용역의 비중과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용역의 경우, 그 타당성과 활용성이 미흡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수행상 빈발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①용역계약 전 사전심의 강화 및 용역수행의 투명성 제고, ②자료 공개 및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유사 중복용역 방지, ③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정책연구용역의 효과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핵심사항들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각 조문에 적절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내용에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